HACCP 인증(연장)심사 수수료 한시적 감면 안내문

< 안 내 문 >

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 재난지역소재 업소 및 전국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<u>HACCP 인증(연장) 심사</u>수수료 한시적 30% 감면을 시행합니다.

가, 지원대상 : 특별재난지역 소재 업소' 및 전국 소규모 업소"

* 특별재난지역

구분	특별재난지역
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	대구광역시, 경북 경산·청도·봉화
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(1차)	경기 안성, 강원 철원, 충북 충주·제천·음성, 충남 천안·아산
진중호우	전남 곡성·구례·나주·담양·영광·장성·함평·화순, 전북 남원, 경남 하동·합천

**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(식약처 고시) 제5조4항에 따른 소규모 업소·작업장 및 축산물 수수료 규정에 따라 소규모 금액을 적용받는 작업장·업소·농장

소규모 업소 기준						
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 준(식약처 고시) 제5조4항에 따른 소규모 업소·작업장	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(식품첨가물 포함)제조·기공업소,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및 축산물가공업소					
	해당 영업장의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, 식육포장처리업소, 축산물운반업소, 축산물보관 업소, 축산물판매업소,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소					
			바리인증기준 용받는 업		네) [별표4] 3.	소규모 업소
축산물 수수료 규정에 따라 소규모 금액을 적용받는 작업장·업소·농장			등록된 작 ' 공업, 알가공		200㎡ 미만 인	식육가공업,
	"영업신고 관리대장"에 등록된 영업장면적이 66㎡ 미만인 식육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,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, 식용란 선별포장업					
	심사 신청서에 의해 제출한 구비서류(운영실적)의 평균사육두수 (부화업은 축산 업등록증상 1회 입란 능력)가 이래 표와 같은 가축사육업, 종축업 및 부화업					
	소	돼지	닭 (메추리포함)	오리	양 (염소 산양, 면양	부화업
	50두 미만	1천두 미만		1만수 미만	400 미만	300,000 미만

나. 기간 및 감면율

구분	수수료 감면 적용기간	감면율	
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업소 및 전국 소규모 업소	'20.8.1. ~ '20.12.31.	시시 스스크이	
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(1차)	'20.8.7. ~ '20.12.31.	200/ 가머	
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(2차)	'20.8.13. ~ '20.12.31.	50% 검단	

다. 신청방법 : HACCP 인증(연장)심사 신청서 제출 시 유형별 매출액 또는 종원업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*를 함께 제출

* '19년 생산실적보고 자료, 표준재무제표증명, 고용보험가입자목록 등

라. 문의 : 지역별 관할지원

서울지원 (서울·강원·경기북부)	☎ 02−860−6900	대 구지 원 (대구·경북)	☎ 053−950−1500
부산지원 (부산·울산·경남)	☎ 051−933−0100	광주지원 (광주·전라·제주)	☎ 062-380-0500
경 인 지 원 (인천·경기남부)	☎ 031−390−5200	대전지원 (대전·세종·충청)	≅ 042−251−1169